



청원 보충 자료

한국어

1472-1474호 청원은 이전 판본에서 실수로 누락되었으며, ¶ 610과 관련된 청원은 일부 청원 정보가 근거 부분에 포함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August 12, 2026

목차

번호	¶	제목	페이지
1472	¶ 302.7	더 온전한 결혼 신학을 위한 청원	2
1473	¶ 302.8	성적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청원	3
1474	¶ 302.9	성적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원	4
1336	¶ 604.8	감독 선출	5
1335	¶ 610.5	공개 순회에 대한 책임	6
1247	¶ 610.7	상담 파송 과정	7
1334	¶ 610.9	임시 목회자	8

This supplement stands alone: page numbers above refer only to this document, not to the GC2026 Pre-Conference Petitions Report v1.30.

더 온전한 결혼 신학을 위한 청원

청원자: Daniel Rickman

제출자 유형: 개인

소속: Blackwell (미국: 하트랜드)

근거:

제302조 제7항의 현행 문구는 결혼이 평생의 언약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일부 사람들에게 글로벌 감리교회가 이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 윤리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는 복음의 기쁨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당 항에 제시하는 주요 추가 내용은 결혼에 대한 완전하고 성경적인 목적과 비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건전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성과 관련하여 회개하도록 부르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없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302.7항을 수정합니다

1 ¶ 302.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

- 2 7. 우리는 인간의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평생 지속되고, 사랑하며, 일부일처인
3 결혼이라는 법적·영적 언약 안에서 표현될 때 이를 긍정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의 성화를 위해,
4 자녀의 출산과 신앙 안에서의 양육을 위해,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5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연합시키십니다. (창세기 2:18-25, 출애굽기 20:14, 마태복음
6 19:3-9, 로마서 7:2-3, 고린도전서 7:38-39, 에베소서 5:22-33, 디모데전서 4:1-5, 히브리서 13:4).

성적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청원

청원자: Daniel Rickman

제출자 유형: 개인

소속: Blackwell (미국: 하트랜드)

근거:

현행 302.8항은 서구 사회와 그 밖의 많은 사회에 만연한 성적 죄에 관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이 당혹스러운 만큼 부족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성적 죄를 둘러싼 우리 문화의 혼란은 모호한 언어로 인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우리가 명시적이고 상세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간음이나 이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신 두 가지 주요 관심사를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적인 죄로 명명하는 것에 대해 선택적이라고 비난하는 진보적 비판자들의 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으로 ¶ 302.8을 수정함

1 ¶ 302.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

8. 우리는 간음, 포르노, 일처다부제/일부다처제, 수간, 근친상간, 강간, 소아성애, 매춘, 동성 성행위, 음행(동거 포함),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와 관계가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광범위한 문란함을 포함한 모든 성적 행동 표현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간음, 포르노, 일처다부제/일부다처제, 수간, 근친상간, 강간, 소아성애, 매춘, 동성 성행위, 음행(동거 포함), 그리고 광범위한 문란함을 포함하여 성적 부도덕의 모든 표현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성적 부도덕한 행위와 관계는 각 개인의 신성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사물화하거나 비하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와 그 파괴적인 왜곡에 마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그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사물화하거나 비하하며, 그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설계에 미치지 못하고 그 파괴적인 왜곡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또한 죄악된 이혼에 대해 슬픔을 느낍니다. 이혼 관행은 일반적으로 기독교 믿음과 양립할 수 없으며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배합니다. 즉, 성경은 일부 경우에 이혼을 허용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간의 화해가 이상적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가정은 치유의 은혜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혼, 성, 젠더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며, 성생활에서 상처를 경험했거나 그러한 상처에 기여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와 환대와 치유의 장소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결혼과 성에 관한 성경적 관점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초대하며, 성생활에서 상처를 경험했거나 그러한 상처에 기여한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전한 피난처와 환대와 치유의 장소가 되기로 헌신합니다.

18 (창세기 1:27, 창세기 2:24, 고린도전서 6:9-20).

19 (창세기 1:27, 창세기 2:24, 출애굽기 20:14, 레위기 18:6-18, 20, 22-23, 말라기 2:13-17, 마태복음 5:27-32,
20 마태복음 19:1-12, 마가복음 10:1-12, 누가복음 16:18, 고린도전서 6:9-20, 고린도전서 7:10-16, 데살로니가전서
21 4:1-8).

성적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청원

청원자: Daniel Rickman

제출자 유형: 개인

소속: Blackwell (미국: 하트랜드)

근거:

이 새로운 문단이 없다면, 앞서 나오는 문단들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잃게 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인 서약은 명시적으로 회개와 거룩한 삶을 촉구하지만, 많은 지역 교회들은 그러한 서약이 진실한지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사람들을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단은 세례와 언약 공동체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서 회개의 성경적 기준을 세우며, 동시에 교인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문구는 또한 이 기준을 집행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302.9을 수정합니다

1 ¶ 302. 세상에 대한 우리의 증언

- 2 9.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는 성적 부도덕을 지속하는 그 누구도 지역 교회 교인 자격으로 영접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지역 교회 교인이 성적 부도덕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역 교회는 ¶ 422.3에 기술된 바와 같이 사랑
4 안에서의 책임과 징계를 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목회자와 기타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이혼을 조장해서는 안
5 되며, 전 배우자가 여전히 생존해 있는 이와 재혼하는 이들에게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접근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6 리더십은 거룩함을 향한 적극적인 부르심뿐만 아니라 성적 부도덕, 간음, 이혼에 대한 우리의 금지적 입장의 관점에서
7 우리의 성윤리를 설교하고 본을 보여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독 선출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04.8을 수정합니다

- 1 8. 감독은 최대 두 번의 6년 임기를 수행할 수 있으나, 스콧 J. 존스 감독과 마크 J. 웹 감독은 2026년 총회에서
- 2 임후보할 수 있습니다. 창립 총회 소집에서 감독으로 선출된 사람은 존스 감독과 웹 감독을 제외하고는 2026년
- 3 총회에서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의 3/4의 찬성표를 받지 않는 한 2026년 총회에서 감독권 선거에 임후보할 수
- 4 없습니다. 새로 선출된 감독들 가운데 절반을 초과하여 재선될 수 없으며, 재선되는 경우 한 번의 6년 임기로만
- 5 가능합니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은 새로운 절반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웹 감독과 존스 감독을 제외하고,
- 6 2024년에 선출된 감독들 중, 투표용지에 포함될 자격 기준인 3/4 이상의 표를 얻은 감독들이 전체의 1/2을 초과하는
- 7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재선 후보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은 1/2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득표수가 가장 높은 순서대로
- 8 결정됩니다.

공개 순회에 대한 책임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비현실적입니다. 총리사들이 파송합니다. 감독들이 파송을 승인합니다. 그들은 이 업무에 대해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직접 책임을 집니다. 연회 감리직 위원회들은 이 정보를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0.5.b 및 ¶ 610.5.c를 수정합니다

- 1 610.5.b 및 c. 매년 각 연회의 감독 및/또는 총리사는 연회 감리직위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 2 고려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실제로 이루어진 타인종/타문화
- 3 파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해야 하며, 아울러 타인종/타문화 파송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고 고려되었는지도
- 4 밝혀야 합니다. c. 연회 감리직 위원회는 매년 연회가 공개 순회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을 글로벌 주교직
- 5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매년 각 연회의 공개 순회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연회 감리직
- 6 위원회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5.b 및 c. 각 연회의 감독 및/또는 총리사는 공개 순회에 대한 헌신을 이행하는 데
- 7 있어서 연회가 이론 진전을 매년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며,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는 각 연회에서 공개
- 8 순회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및/또는 총리사에게 매년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상담 파송 과정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현재 언어는 "상담"에 의한 파송 과정이 아니라 "회중의 청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본 청원은 ¶ 610.7을 수정합니다

- 1 7. 파송 절차는 철저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협의는 총리사 및/또는 감리사가 목회자 및 목회 협력 위원회와
- 2 협의하여 (a) 회중의 선교를 위한 필요, 특성 및 기회, (b) 목회자와 배우자 및 가족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
- 3 전문적 경험 및 기대, (c) 선교적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협의는 지속적인 과정이며, 파송 변경 기간 동안에는
- 4 더욱 집중적인 관여가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우, 교회는 목회자 면접을 위해 두세 명의 후보자를 제공받을 수
- 5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는 제안된 파송을 악의 없이 거절할 권리가 있으며, 가용 인력과 가능한 파송지 등의 요인으로
- 6 인해 교회가 임시 설교자의 섬김을 받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목회자 파송을
- 7 위해 감리사회에 의존하지만, 교회는 감리사와 총리사의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목회 지도자 탐색 과정을 진행할 수
- 8 있습니다. 최종 면접은 사역 위원회가 검토 중인 목회자를 승인하고 감리사와 총리사가 승인하기 전에는 일정이
- 9 잡혀서는 안 됩니다. 감리사 또는 감리사회가 지정한 사람은 파송 과정에서 지원과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 10 교회와의 최종 면접에 참석해야 합니다. 감독회는 협의 절차의 실행에 대해 각 감독 지역 내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 11 물어야 합니다.

임시 목회자

청원자: 총회 대표단
조직: 미국: 미드텍사스

제출자 유형: 단체
입법 위원회: 감리직

근거:

불필요함

텍스트(의제 설명):

본 청원은 ¶ 610.9을 수정합니다

- 1 610.9. 임시 목회자. 자상 명령과 성령의 능력(마 28:18-20; 행 1:8)에 충실하고, 교회가 목회자 파송의 과도기를 잘
- 2 통과할 수 있도록, 임시 목회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연속성이 끊기는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 3 이러한 상황에서는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나 임시 목회자가 치유를 돕고 목회 지도력을 제공할 수 있다. 감독, 총리사 및
- 4 감리사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평신도 또는 목회자 출신의 임시 사역자를 그러한 회중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